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 구민의 건전하고 다양한 취미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으로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지방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합창단 구성(제2조) : 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 나. 운영위원회 구성(제4조) :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 등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 다. 단원의 자격(제5조) :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라. 단원의 위촉(제7조) :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검토의견

이 제정 조례안은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취미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론 지역문화예술진흥으로, 구민정서의 함양, 우리 구의 위상제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지방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합창단 구성(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제4조), 단원의 자격(제5조)과 단원의 위촉·해촉, 실비보상(제10조)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 제3항에서는 합창단 단장만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합창단에 대한 실무를 맡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휘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실비보상에 관련하여 제10조 제2항에서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및 전형에 참여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매년 2천여만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 서구의 재정형편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조례안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